

【조 약】

- 조약제2353호(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 3
- 조약제2354호(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18

【부 령】

- 법무부령제90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1

【고 시】

- 금융위원회고시제2017-18호(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32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0호(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32
- 환경부고시제2017-102호(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3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1호(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3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2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48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3호(시화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49
- 해양수산부고시제2017-77호(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59
- 병무청고시제2017-1호(201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8년도 인원배정) 6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4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41차>) 6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6차> 승인) ... 137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국적상실)..... 181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1호(국적상실)..... 18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18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4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184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0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184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85

【공 고】

- 법제처공고제2017-75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6
- 법제처공고제2017-76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

(이면 계속)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1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189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2호(전자금융업 등록).....	189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3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4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1
○환경부공고제2017-424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9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3호(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19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4호(신기술 지정 신청)	19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5호(신기술 지정 신청)	19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38호(신기술 지정 신청)	19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39호(신기술 지정 신청)	19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40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44호(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	199
○여성가족부공고제2017-89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0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71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
○산림청공고제2017-156호(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06호(엑셀러레이터 신규등록).....	20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9호(행정처분 통지)	203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7-61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04
○전라남도공고제2017-495호(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205
○안양시공고제2017-701호(차량 운행 제한)	205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205
-----------------------------	-----

<범위>

아래층 바닥에서 직접 패널을 손으로 내릴 수 있도록 드롭형 멩에보와 가스스프링을 적용하여 상층 Slab 저면에서 650mm까지 One-Step 으로 천천히 Down시켜 안전성을 높인 저소음형의 AI Form System 적용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부토건(주)(남금석) ② 고려개발(주)(박상신) ③ 동부엔지니어링(주)(노재화) ④ 평화지오텍(주)(박종호)
 나. 전화번호 : ① 02-3706-2537 ② 031-420-9952 ③ 02-2122-6795 ④ 031-744-345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3호

3. 명칭 :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고강도 강관 내부에 사각형 강재보강재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이용하여 전단 및 휨 강성을 보강시켜 안정성을 개선한 공법으로서, 삽입된 강관 외벽 입구부와 천공홀 내부를 급결시멘트로 코킹하고 중력식 그라우팅으로 실링한 후, 복합강관을 통해 가압주입을 수행하여 보강재 주변 원지반 전단강도를 증가시켜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고강도 강관에 사각형 스티프너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보강재로 사용하고, 강관선단부에 설치되는 그라우트 주입호스 커넥터와 포켓패커를 이용하여 압력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비탈면 보강 네일링 공법.

5. 보호기간 : 2012.10.08 ~ 2017.10.07.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44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1.25%	0.1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1.25%	0.1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60%	0.133%

나. 적용기간 :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